

『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불출석·증언거부
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·징수 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14년 11월 20일

나. 발 의 자 : 손홍섭, 권기만, 김복자, 박세진, 안장환,
안주찬, 윤영철, 정근수, 정하영, 한성희,
허 복(11명)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11월 24일

라. 상정일자 : 2014년 12월 18일

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

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손홍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『지방자치법』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, 출석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과태료 부과대상(안 제2조)
- 부과기준(안 제3조)
- 과태료 부과·징수 등(안 제4조)
-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(안 제6조)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-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3조, 제6조
-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제4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백 승 해

□ 본 조례안은

-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·조사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불응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임
- 그 주요 내용으로는,
 -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한 자에 500만원 이하
 -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 300만원
 -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
 -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부과·징수

□ 검토결과

- 본 제정 조례안은 「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9조 제4항 불출석 및 증언 거부 등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선언적, 상징적인 의미로 명시되어 있어 보다 세부적이고 실효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우고자 하는 것으로
-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